재 결 요 약 서

<table>
<tr><td>사 건 명</td><td>광탄선 벌크호 · 유조선 오션호 충돌사건
(○○해심 제2026-001호, 2026. 10. ○○. 재결)</td></tr>
<tr><td>해양사고관련자
(직책, 해기면허)</td><td>1. 김광석(벌크호 선장, 1급항해사)
2. 박대양(오션호 선장, 파나마 면허 1급항해사)</td></tr>
<tr><td>판 시 사 항</td><td>1. 판시요지
가. 양 선박은 침로를 유지하는 한 단시간 내 근접하지 않았고 오션호가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지 않았으므로, 앞지르기·횡단 항법이 아닌 선원의 상무를 적용함.
나. 벌크호 선장이 오션호를 초인하고도 20분간 증속하며 피항하지 않다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VHF 교신과 단계적 기관 조작에 의존하여 피항 시기를 놓친 과실을 인정함.
다. 오션호 선장이 수동조타 중 조타감시를 소홀히 하여 묘박지를 벗어나 벌크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한 과실을 인정하고, 양측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103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td></tr>
<tr><td>원인판단 주제어</td><td>선원의 상무, 피항 지연, 증속, VHF 의존, 조타감시 소홀, 묘박지 이탈, 충돌</td></tr>
<tr><td>사 건 개 요</td><td>□ 관련선박 :
<table>
<tr><th>선 명</th><th>용 도</th><th>총톤수/
길이</th><th>선박소유자/
선적항</th><th>피 해</th></tr>
<tr><td>벌크호</td><td>광탄선
(광석 만재)</td><td>110,000톤/
300.00m</td><td>김광석/
대한민국</td><td>정선수 우현부</td></tr>
<tr><td>오션호</td><td>유조선
(원유 만재)</td><td>55,000톤/
230.00m</td><td>박대양/
파나마</td><td>좌현 선수 측면</td></tr>
</table>
□ 일 시 : 2026년 5월 25일 04시 33분경
□ 장 소 : 민국항 외항 묘박지 서측 경계 부근 해상
□ 사고경위
광석을 만재한 광탄선 벌크호는 민국항 도선점을 향해 항해하던</td></tr>
</table>

	중 04:05경 우현 선수 약 2.6마일에서 저속으로 대기하던 유조선 오션호를 초인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8.3노트까지 증속하였다. 원유를 만재하고 도선사 승선을 기다리던 오션호는 수동조타 상태에서 15분간 약 108도 좌선회하며 묘박지를 벗어나 벌크호의 진로 전방을 가로질렀다. 벌크호는 04:25경 약 1.2마일에서 VHF로 오션호를 호출한 뒤 감속·후진하였고 오션호는 전진·우현전타하였으나, 04:33경 벌크호의 정선수 우현부와 오션호의 좌현 선수 측면이 충돌하였다.
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민국항 도선점을 향하여 접근하던 유조선 오션호가 외항 묘박지 부근에서 도선사 승선을 기다리며 저속으로 대기하던 중 조타감시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체가 좌선회하는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묘박지를 벗어나 뒤따라오던 광탄선 벌크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한 것과, 벌크호가 오션호의 접근과 횡단 자세를 알면서도 증속한 채 조기에 감속 및 변침 등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VHF 교신을 먼저 시도하여 피항 시기를 놓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김광석을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박대양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참 고 사 항	※ 원인제공비율: 오션호 50%, 벌크호 50%
교 훈	1. 상대선이 진로를 횡단하는 것이 보이면 VHF 교신보다 감속·변침을 먼저 하여야 한다. 2. 만재 거대선은 정지거리와 선회성능을 고려하여 충분히 먼 거리에서 피항하여야 한다. 3. 도선 대기선은 투묘하거나 선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동조타 시 타각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상대선의 도선 순서만을 근거로 상대선이 피할 것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같은 도선점에 도착하는 선박에는 도선 순서와 대기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